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8. 10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영상정보 반환 과정의 번거로움과 유출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기관에서 파기하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제25조제3항 중 “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” 를 “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” 를 “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    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5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</p> <p>①·② (생   략)</p> <p>③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<u>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5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과기하도</u> <u>록 하여야 한다.</u></p>